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65회 제2차 정례회(2023. 11. 30.)

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복지도시위원회

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의안 번호	23-173
----------	--------

1. 제출경위

- 가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(자원순환과)
- 나. 제 출 일 : 2023. 11. 17.
- 다. 회 부 일 : 2023. 11. 20.

2. 제출이유

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4항 시행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 명시
- 나. 별표 제1호 서식 위반사항 및 근거조항 번호 상위법에 맞게 수정
- 다. 제명,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 띄어쓰기 수정
「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」 → 「서울특별시 마포구
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」
- 라. 그 밖에 불필요한 조문 삭제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다. 기타
 - 1) 입법예고 : 2023. 10. 5.~ 2023. 10. 25. (의견 없음)

2) 행정규제 사전심사 : 원안 동의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 개정 배경

- 본 조례 개정은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4항 개정 시행(2023. 7. 21.)에 따라 범죄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한 위임사항을 조례에 정하고자 제출됨.

나. 주요 조문 검토

- 조례 제명에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수정함.
- 안 제5조 제2항은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를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임.

다. 종합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¹⁾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)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임.
- 개정조례는 법에서 안전관리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공중화장실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기관에 위임한 것으로 ①구청장과 공단 등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과 ②기타 구청장이 인정한 공중화장실로 명시하고 있음.
- 이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최소한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안전에 도움이 되고 개정의 시의성과 구조적 정합성을 이루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.

1) 법 제2조(정의) 1. “공중화장실”이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, 지방자치단체,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.

- 다만, 민간과 협의하여 정한 개방화장실에 경우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의무가 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음.
- 과도한 규제로 민간개방화장실 감소 우려의 부정적 의견도 있지만, 화장실의 ‘최소한의 안전 확보’와 ‘이용 편의성 도모 등’ 긍정적 의견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에도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최소한의 민간참여를 유도해야 하겠음.
- 참고로, 마포구는 매년 안심비상벨과 안심스크린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, 관내 공중화장실 총 36개소와 개방화장실 총 48개소가 위치해 운영되고 있고 이중 안심비상벨은 공중화장실 여자 35개소와 남자 23개소가 설치되어 있음.

〈표 1. 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예산편성 내역 (23.5.31.기준)〉

(단위:천원)

구분	2021년	2022년	2023년
비상벨	-	5,000	15,600
안심스크린	-	4,000	9,150
공중화장실 CCTV	-	-	28,800
민간개방화장실 CCTV	-	2,500	5,000

〈표 2.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현황〉

구분	공중화장실(개소)	
	여자화장실	남자화장실
안심비상벨 설치 현황	35/36	23/36

전문위원	신준호
주무관	박철호

[관 계 법 령]

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

제7조(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)

-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(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)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,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.